

CHICAGO BOARD OF TRADE 제재조치 공지

사건 번호: CBOT-14-9846-BC

비회원: Ying Zheng

관련 규정: Rule 432. 일반 위반

L.1. 정당하게 소집된 청문회, 거래소 직원과 예정된 면담 및 제 조사와 관련하여 이사회, 직원 또는 조사위원회 및 청문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

Rule 576 Globex 단말기 이용자의 신원 확인

각각의 Globex 단말기 이용자는 거래소가 미리 정한 방법에 따라 신원 확인을 받아야 하고, 거래소 규정에 따라야 한다. 거래소에 사용자 ID의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 등록이 여전히 유효하며 항상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관련 청산회원의 의무이다. 각 개인이 Globex에 접근하려면 고유한 사용자 ID를 이용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든지 자신의 고유한 사용자 ID가 아닌 ID를 이용하는 개인의 주문을 입력하거나 그 입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검토 결과: 2017년 6월 9일 CBOT Rule 407.C에 의거 CBOT 영업행위규제위원회("BCC")의 청문소위원회 의장은 Ying Zheng이 CBOT 예비조사위원회(Probable Cause Committee)가 자신에 대해 제기한 혐의에 답변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문소위원회 의장은 제기된 혐의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간주하였고, 이에 Zheng은 혐의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 해명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2017년 6월 20일, 인정된 해당 혐의와 관련한 CBOT BCC의 소위원회에 제재심의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Zheng이 다른 개인에게 자신의 Tag 50 사용자 ID를 이용하여 거래하도록 허락했고, 예정된 거래소 직원과의 면담에 출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Zheng이 CBOT Rule 432.L.1 및 576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제재 내용: 관련 기록과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판단에 근거하여 소위원회는 Zheng에게 벌금 \$10,000를 부과하고 1년간 (1) CME그룹의 모든 거래소에서 회원권 및 특권; (2) CME그룹의 제 거래소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CME Group 거래 플로어, 전산거래 및 청산 플랫폼에 대한 직간접적 접근 및 이용; (3) 브로커 협회, 보증 중개 브로커(guaranteed introducing broker) 및 CME 그룹의 모든 거래소, 거래 플랫폼 또는 청산 플랫폼의 회원 및 그 관계인과 연계, 이들에 의한 고용 혹은 이들과의 제휴를 금지하였다.

효력발생일: 2017년 7월 24일